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. 12. 18 선고 2024가단3787 판결 [건물명도 등]

## 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2. 4.

판 결 선 고 2024. 12. 18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
나. 1,2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9. 8.부터 2024. 12. 18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 
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,

다. 2024. 3. 20.부터 위 가.항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
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### 2. 적용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최미복

별지